

## 외국의 국민영양관련 조사사업

- 일본의 경우 -

이 경 신

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

### 일본국민영양조사의 연혁

1) 연합군 사령관의 지령에 의거하여 실시된 시기 (1945-1951)

(1) 외국으로부터 긴급식량원조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GHP의 지령에 의거하여 일반 주민의 영양조사를 실시

- 1945년 12월, 동경도 3,500세대, 30,000인 대상
- 영양섭취상황, 신체상황

(2) 1946년이후 전국 규모로 년 4회(2, 5, 8, 11월) 실시

(3) 1949년이후부터는 식량원조대책의 기초자료의 의미보다, 식량생산계획, 공중위생상 영양의 확보, 개선의 기초자료로서 의미 부여

2) 영양개선법에 의거하여 실시된 시기

(1) 조사방법의 대개정이 있기 전까지(1952-1963)

① 1952년 영양개선법 제정

: 국민영양조사는 법률에 의거한 조사로서 실시되기 시작함.

② 1956년 식비조사, 혈압, 맥박, 상완위 계측이 추가 신체상황조사는 년 2회만 실시

③ 1957년, 조사대상자가 농사, 비농사로 분류됨.

(2) 조사방법 대개정(1964-1971)

① 1961년이후 지역간, 소득계층간 영양 수준의 격차가 커지고 건강증진과 영양과의 관계파악의 필요성이 대두됨.

② 1964년 3월 영양심의회 의 답신에 따라 조사방법이 크게 개정됨.

- 지출계층별, 지역별 영양상태 파악
- 조사회수는 년 1회, 5월, 연속 5일간으로 함.
- 외식상황 파악
- 체력조사(약력)의 추가
- 특수조사 실시

③ 1969년부터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고, 국민의 건강 유지·증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대책에 중점을 두게 됨.

(3) 조사방법의 일부 개정(1972-1988)

① 평균적인 영양상태는 개선되었으나 불건강상태의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식생활 실태를 각 개인의 건강상태와의 관련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함.

② 1972년 5월 영양심의회 의 답신에 의거 조사방법 일부 개정

- 영양섭취상황 조사에 개인조사가 추가
- 식사형태의 실정을 조사
- 신체상황조사에 의학적 조사내용을 확충(→빈혈, 요검사, 피하지방두께 측정)
- 체위, 체력에 관한 조사를 확충
- 식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·경제적 요인에 관하여 조사(→ 식생활 상황조사 추가)

(4) 현행조사

### 현행국민영양조사의 개요

#### 1. 목적

영양개선법(1952년)의 제2조에 의거

(1) 국민의 식품섭취량, 영양소등 섭취량의 실태를 파악한다.

(2) 영양과 건강의 관계를 밝힌다.

(3) 건강증진대책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다.

#### 2. 실시기관

후생성 보건의료국 건강증진영양과

#### 3. 조사대상

국민생활기초조사에 의해 설정된 조사단위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300지구내의 약 7,000세대 및 세대원 약 20,000명

(1) 업종별 분류

- 농가세대(경지면적 0.3hr이상 세대)  
: 전업세대, 기타세대
- 비농가세대(경지면적 0.3hr미만 세대)  
: 자영업세대, 상용근로자세대, 일일고용근로자세대, 기타세대

(2) 도시규모별 분류

11大도시 : 인구 15만이상 市 : 인구 5~15만 市 : 인구 5만 미만 市 : 촌의 5분류

(3) 지출계층별 분류(1인 1개월당 가계상의 현금지출액)

2만엔미만 세대 : 2~3만엔미만 세대 : 3~4만엔미만 세대 : 4~5만엔미만 세대 : 5~6만엔미만 세대 : 6~7만엔미만 세대 : 7~8만엔미만 세대 : 8만엔 이상 세대의 8계층분류

(4) 지역군별 분류

전국을 12지역으로 분류

4. 조사시기 : 매년 1회, 11월

- 신체상황조사 : 11월중
- 영양섭취상황조사 : 11월중 연속한 3일간 (경축일 제외, 관혼상제등 식품섭취에 변화가 있는 날 제외)
- 식생활상황조사 : 영양섭취상황조사중의 1일

5. 조사항목

1) 신체상황조사

체위(신장, 체중)	만 1세이상
혈압, 피하지방두께	만 15세이상
*체력(약력)	만10~59세
*혈액검사(HCMC, Hb)	만18~59세
*뇨검사(노단백, 뇨당)	만18~59세
문진(혈압강하제사용, 운동, 음주, 흡연의 유무, 1일평균 음주량, 1일평균커피연량)	만20세이상
혈액검사(HDL, cholesterol, GOT, GPT등)	만30세이상 1989년이후
보수에 의한 1일 운동량조사	만 30세 이상
Ergometer에 의한 최대산소섭취량조사	만30세이상
심전도검사	1990년이후

2) 영양섭취상황조사

세대상황(성명, 성별, 생년월, 임부/수유부별, 일의종류, 활동강도 등)  
식사상황(3일간의 가정식/외식/결식의 구별)

식품섭취상황(3일간의 식사의 요리명, 섭취한 식품의 명칭및 수량)

\*개인조사 : 3일째의 식사상황, 식품섭취상황, 만18~59세

3) 식생활상황조사

매년 질문사항 및 대상자를 바꾸어 식생활에 관한 질문지조사를 실시

1972,1973 : 비만,빈혈을 중심으로 한 생활요인조사

1974 : 식생활상황조사

1975 : 노인의 식생활상황조사

1976 : 식사의 balance를 중심으로한 식품관조사

1977 : 비만,빈혈을 중심으로 한 생활요인조사

1978 : 부인의 생활상황조사

1979 : 비만에 관한 조사

1980 : 식염 섭취에 관한 조사

1981 : 가공식품의 이용상황

1982 :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식사에 관한 조사

1983 : 성인여자의 빈혈에 관련된 식생활상황조사

1984 : 비만, Family-restaurant 이용상황, 식단지게

1985 : 식사의 balance와 관련된 식생활상황조사

1986 : 가공식품의 이용상황

1987 : 식사의 balance, 운동의 실시상황

1988 : 운동습관, 음주와 흡연습관조사, 어린이의 식생활상황조사

1989 : 노인의 식생활상황

1990 : 30세이상 성인의 식생활상황

6. 업무체계

1) 후생성 : 조사의 기획/입안, 조사지구의 추출, 결정, 조사양식의 승인수속등

2) 지방자치행정기관 : 조사방법의 회의, 조사원의 임명수속, 조사용지의 배부등

3) 보건소 : 조사반편성, 조사용지정리, 지구설명회개최, 조사의 실시등

4) 조사실시후 : 보건소에서 집계, 정리, 심사를 함, 지방자치행정 기관을 통하여 후생성에 보고, 후생성에서 전국을 집계

5) 집계후 : 후생성에서 결과표작성, 결과해석, 공표

7. 결과의 공표

『國民營養의 現狀』이라는 책자로 매년 공표

8. 조사원의 구성

영양사, 의사, 간호사, 위생검사기사 및 조수로 구성

### 9. 조사요령의 특기사항

#### 1) 신체상황조사

조사대상세대의 가족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 
피조사자의 집합에 편리한 일정장소에서 모여서 실시한다.

#### 2) 영양섭취상황조사

미리 조사용지를 배포하고 면담을 통하여 기입요령을 설명한다

세대단위로 요리명, 식품명, 원식품사용량, 폐기량, 순섭취량을 저울을 이용하여 칭량하고 기입한다.

조사원이 매일 직접방문하여 기입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정정한다.

## 국민영양조사와 관련된 법률 및 그 관계조문

### 영양개선법

#### 법 제 2 조(국민영양조사의 실시)

① 나라는 영양개선의 방법을 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민의 건강상태, 영양섭 취량, 영양섭취와 경제부담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국민영양조사를 실시한다.

② 국민영양조사는 신체상황조사 및 영양섭취 상황조사로 하며, 매년, 후생 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.

③ 지방자치행정기관장은 후생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관할구역내의 국민영양조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.

#### 법 제 3 조(피조사자의 선정 및 협력업무)

① 국민영양조사 대상의 선정은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, 매년, 후생장관이 조사 지구를 정하고 그 지역내의 지방자치행정기관장이 조사세대를 지정함에 따라 행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조사세대에 속하는 사람은 국민영양조사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.

#### 법 제 4 조(국민영양조사원)

국민영양조사의 사무를 위해 지방자치행정기관은 국민영양조사원을 둘 수 있다.

③ 국민영양조사원은 실시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,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, 나아가 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한다.

#### 법 제 5 조(비용부담)

국고는 국민영양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

#### 법 제 6 조(조사표의 사용제한)

국민영양조사를 위해 거둔 조사표는 영양개선 기타 직접 복지향상을 꾀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다.

#### 법 제 7 조(성령에의 위임)

앞 5조에서 정한 것 이외, 국민영양조사의 방법, 조사 항목, 기타 국민영양조사의 실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후생성령에서 정한다.

#### 규칙 제 1 조(신체상황조사)

법 제 2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신체상황조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하며, 국민영양조사원은 피조사자의 신체상황을 측정, 진단하여, 그 결과를 후생장관이 정하는 조사표에 기입하거나 피조사자별로 해당조사표를 배포하고 기입된 조사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한다.

- 신 장
- 체 중
- 피하지방두께
- 혈 압
- 기타 신체상황에 관한 사항

#### 규칙 제 2 조(영양섭취상황조사)

법 제 2조 제 2항에 규정된 영양섭취상황조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하는 것으로 하며, 국민영양조사원이 조사세대별로 후생장관이 정하는 조사표를 배포하고 기입된 조사표를 제출받는 것으로 한다.

- 세대 및 세대원의 상황
- 식사의 상황
- 식사의 요리명, 식품의 명칭과 그 섭취량
- 기타 영양섭취에 관한 사항

#### 규칙 제 3 조(조사세대의 지정통지)

지방자치행정기관장은 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세대를 지정할 때, 그 취지를 해당세대의 세대주에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규칙 제 4 조(국민영양조사원)

① 국민영양조사원은 의사, 영양사, 보건부, 기타사람 중에서 매년 지방자치 행정기관장이 임명한다.

② 국민영양조사원은 임시직으로 한다.

#### 규칙 제 5 조(국민영양조사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)

법 제 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영양조사원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기양식 제 1호에 의한다.